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제20조의5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조의2) 제1항 및 제2항 중 “법 제2조의3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51조의3제2항”으로 하며, 제2조의2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3(시행계획의 수립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4(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의 구성)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”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을 말한다.

제2조의5(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의 임기) 마약류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
제2조의6(협의회 위원의 해촉)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2조의7(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조의8(협의회 회의)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의9(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등)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.

③ 실무협회의 위원은 법 제2조의4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마약류 관련 단체·연구기관과 학계·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민간위원“이라 한다)이 된다.

④ 실무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회에 수사·단속·정보분과위원회, 치료·사회재활분과위원회와 예방·교육·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⑤ 수사·단속·정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위원 중 외교부·행정안전부·방송통신위원회·국가정보원·식품의약품안전처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의 해당 위원과 민간위원중 협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치료·사회재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·보건복지부·식품의약품안전처·대검찰청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, 예방·교육·홍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부·법무부·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⑥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8 규정은 실무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2조의10(협회의 운영세칙 등) ① 협회 및 실무협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법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2조의11(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)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
2.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
3.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

제18조를 제20조의6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8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9조”를 “법 제51조의5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9조제2항”을 “법 제51조의5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7 및 제20조의8로 하고,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인력의 양성·활용 및 사회재활사업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·활용과 사회재활사업

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제도 운영
2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3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지원
4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5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
6.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
7.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설치·운영 지원 및 평가
8.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

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2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인력 양성기관

제20조의3(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자료 또는 정보 요청의 목적 및 활용

2.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

3.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②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,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4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 위탁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51조의2제1항1호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·상담 및 홍보 지원

2.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 지원

3.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

4.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

료 또는 정보의 처리

5. 제2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시설 입소에 필요한 입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의7(종전의 제20조의2)제1항 중 “법 제51조의2제5항”을 “법 제51조의6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법 제5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51조의6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51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51조의6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, 제2조의2 및 제2조의3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의2부터 제2조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를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의5, 제2조의6 및 제2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시행계획의 수립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4(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의 구성)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”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을 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5(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의 임기) 마약류대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</u>

<신 설>

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.

제2조의6(협의회 위원의 해촉)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<신 설>

제2조의7(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)

-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 통할한다.
-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8(협의회 회의) ① 의장은

<신 설>

협회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협회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의9(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

협의회 등) ①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회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.

③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은 법 제2조의4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마약류 관련 단체·연구기관과 학계·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"민간위원"이라 한다)이 된다.

④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수사·단속·정보분과위원회, 치료·사회재활분과위원회와 예방·교육·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⑤ 수사·단속·정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위원 중 외교부·행정안전부·방송통신위원회·국가정보원·식품의약품안전처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해양경찰청의 해당 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, 치료·사회재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·보건복지부·식품의약품안전처·대검찰청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, 예방·교육·홍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부·법무부·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⑥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8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조의10(협의회 운영세칙 등)

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법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2조의11(청소년 마약중독예방

교육과 학교교육 연계)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	1. <u>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</u> 2. <u>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</u> 3. <u>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</u>
<u>제2조의2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</u>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법 제2조의3제2항</u>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법 제2조의3제2항</u>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 <u>제18조(마약류 명예지도원)</u> ① <u>법 제49조</u>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	<u>제20조의5(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)</u> ① ----- <u>법 제51조의3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. ② ----- <u>법 제51조의3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20조의6(마약류 명예지도원)</u> ① <u>법 제51조의5</u>----- ----- -----

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마약
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2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51조의5제2항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인력의 양성·활용 및
사회재활사업 등) ① 식품의약
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
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·활용과
사회재활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
재활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
제도 운영

2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
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
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3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
재활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
발굴 지원

4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
자의 사회재활 사업을 위한

<신 설>

프로그램 개발

5.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

6.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

7.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설치·운영 지원 및 평가

8.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

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2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인력 양성기관

제20조의3(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)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자료 또는 정보 요청의 목적

<신 설>

및 활용

2.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

3.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
용기간

②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
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
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
요청에 따라야 하며, 자료 또는
정보의 제공은 서면 또는 전자
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
한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
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, 개
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
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
때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
21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
파기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4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
사회재활 사업 위탁 등) ① 식
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
의2제5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
운동본부 및 그 밖에 식품의약
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다
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
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<u>제20조의2</u>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) ① <u>법 제51조의2제5항</u>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를 식품의	1. <u>법 제51조의2제1항1호</u>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·상담 및 홍보 지원 2. <u>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</u>에 따른 사회재활사업 지원 3. <u>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</u>에 따른 사회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4. <u>법 제51조의2제2항</u>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5. <u>제20조의2제1항제8호</u>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②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</u>은 <u>제20조의2제1항제8호</u>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시설 입소에 필요한 입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<u>제20조의7</u>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) ① <u>법 제51조의6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

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1. <u>법 제51조의2제1항</u>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2. <u>법 제51조의2제4항</u>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<u>제20조의3</u> (생략)	----- 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1. <u>법 제51조의6제1항</u> ----- ----- 2. <u>법 제51조의6제4항</u>----- ----- ----- <u>제20조의8</u> (현행 제20조의3과 같음)
---	---